

특허청 공고 제2020-74호

「특허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19-12호)에 따라 2020년도 특허·실용신안 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특 허 청 장

2020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계획

I. 전문기관 등록계획

- 등록 업무분야 :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 등록 기술분야 : 전체 기술분야(13개)
 - ※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기술분야 및 기술분야별 특허 분류(CPC)는 각각 **【별첨 1】** , **【별첨 2】** 참조

II. 등록 기준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별표1의 특허·실용신안등록 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및 전산검색용 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
 -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구비해야 하는 장비는 **【별첨 3】** 참조
 2.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을 것
 -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 나.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분야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

다. 조사원은 정규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조사원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별표2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Ⅲ. 등록 신청

○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0호 서식(별지1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1. 일반현황, 선행기술조사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선행기술조사 업무 이외에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2.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현황 또는 계획

3.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 또는 계획(배치도 포함)

4.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조사원의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조사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실태조사 전까지 제출 가능)

다. 조사원 재직증명서 사본 및 재직증명 입증자료 1부(실태조사 전까지 제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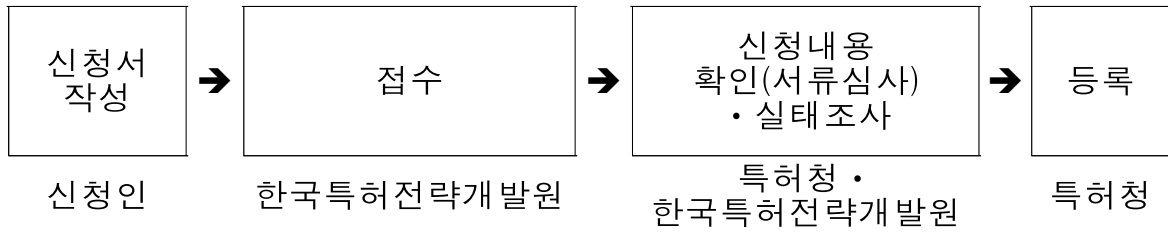
라. 조사원 자격 입증자료(학위, 자격증) 1부

마.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5.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6. 임원·조사원의 서약서(별지2 서식)

IV. 등록 절차



1. 등록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제출
2. 신청서류 등 서면 확인 및 미비 시 보완 요구
3. 등록 신청기관 실태조사 실시
4. 등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전문기관 등록(신청시 등록확인서 발급)

V. 등록신청 접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기간 : 등록 공고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5 우신빌딩 9층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심사지원센터(우편번호 : 06132)
 - ※ 우편 접수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접수를 반려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고시 제2019-12호(2019.7.31.)」를 참고
바라며, 문의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심사지원센터 지태훈 그룹장
(☎ 02-3475-8589), 임수형 선임(☎ 02-3475-8567)에게 문의 바람. 끝.

(별표 1)

특허·실용신안 문헌

구 분	문헌종류	기 간	자료형태
한국	특허 공고 및 공개	1947년~	전 문
	실용신안 공고 및 공개	1947년~	전 문
일본	특허 공고 및 공개	1975년~	전 문
	실용신안 공고 및 공개	1975년~	전 문
미국	특허 공고 및 공개	1976년~	전 문
EPO	특허 공고 및 공개	1978년~	전 문
중국	특허 공개	1985년~	전 문
WIPO	PCT 공개	1978년~	전 문

※ 2017년 현재 특허청의 DB 보유 기준임

(별표 2)

보안현황 점검표

업체명 :

점검일 : . . .

점검자 :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주의	미흡	
1. 관리적 보안체계	1.1 조직 및 담당자 지정	1.1.1 보안 조직(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N/A		O
		1.1.2 보안 조직의 역할 및 책임이 정의되어 있는가?			N/A		O
		1.1.3 자체 보안 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는가?(CEO, 보안담당자, 선행기술조사팀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등)			N/A		O
	1.2. 규정 수립 및 절차 관리	1.2.1 보안 내규는 수립하였는가?			N/A		O
		1.2.2 보안 내규는 CEO결재를 거쳐 수립되었는가?		N/A	N/A		O
		1.2.3 반기 혹은 연간 국가보안 및 정보보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였는가?					
		1.2.4 보안 내규·지침 등이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되고 시행 및 게시되어 있는가?			N/A		
		1.2.5 보안사고 예방 대책 및 보안 위규자의 처벌규정이 있는가?					O
		1.2.6 자체적인 보안사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였는가?			N/A		O
	1.3 교육 및 훈련	1.3.1 보안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N/A		O
		1.3.2 보안 교육 및 훈련은 계획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는가?			N/A		
		1.3.3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국가보안/정보보안)을 실시하는가?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주의	미흡	
1.3 교육 및 훈련	1.3.4	보안 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부교육이 실시되는가?					
	1.3.5	정보보안 담당자는 사이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가?					
	1.3.6	일반 조사원이 사이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가?					
	1.3.7	직원은 의심스럽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외부 전자우편 수신시 열람을 금지하는가?					
	1.3.8	직원은 의심스럽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외부 전자우편 열람시 위기대응 매뉴얼 절차에 따라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신고하는가?					
1.4 점검 및 대책 마련	1.4.1	보안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가?(외부 용역업체와 유지 보수 계약 등)			N/A		O
	1.4.2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감사가 시행되고 있는가?			N/A		
	1.4.3	CCTV 운용시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수립하는가?			N/A		O
1.5 인원 및 위기 관리	1.5.1	선행기술조사와 관련된 임직원 채용 및 퇴직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가?			N/A		O
	1.5.2	선행기술조사와 관련된 임직원 채용 시 특허청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N/A		
	1.5.3	보호가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외부인 출입 시 보안 담당자가 동행하여 이동하는 등 외부인의 방문과 관련 보안 절차를 수행하였는가?			N/A		O
	1.5.4	선행기술조사 업무 수행 중 사고나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화재 발생 시 대책 등)			N/A		O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주의	미흡		
2. 물리적 보안 체계	2.1. 시설보안	2.1.1	보호가 필요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가?		N/A	N/A		O
		2.1.2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용 사무실은 타 업무와 구분하여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N/A	N/A		O
		2.1.3	통제구역·제한구역에 대한 출입통제장치(지문인식, 디지털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N/A	N/A		O
		2.1.4	특허청 업무망과 연결된 PC가 위치한 구역 전체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통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N/A	N/A		O
		2.1.5	통제구역에 별도의 출입통제장치 및 CCTV가 설치되어 있는가?		N/A	N/A		O
		2.1.6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의 출입자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N/A	N/A		O
		2.1.7	전용 사무실은 재해 및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가?			N/A		O
		2.1.8	전용 사무실에 소화설비 등 방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N/A		O
		2.1.9	출입문, 회의실 등의 공간을 타 기관·업체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N/A		O
	2.2 문서보안	2.2.1	VPN실(출원서 전송실)이 별도로 마련되고, 통제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용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는가?		N/A	N/A		O
		2.2.2	VPN실에 미공개 출원서 전자파일의 보관을 위한 착탈식 하드디스크와 비밀번호가 설치되어 있는가?		N/A	N/A		O
		2.2.3	전용 사무실에 특허관련 서류 파기를 위한 문서세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N/A	N/A		O
		2.2.4	미공개 출원서에 대한 관리대장 및 보관전용 2중 잠금 캐비닛이 설치되어 있는가?		N/A	N/A		O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주의	미흡	
3. 기술적 보안체계	3.1 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3.1.1 침입차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N/A		O
		3.1.2 침입탐지/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N/A		
		3.1.3 회선 암호화 장비(또는 암호화 SW) 구축 또는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가?		N/A	N/A		O
		3.1.4 서버 보안을 위한 SW 또는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가?			N/A		
		3.1.5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또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N/A		
		3.1.6 미공개 출원 출력시 매 용지마다 출력일시, 출력자 등을 표시하는 디지털권한관리프로그램(DRM)이 설치되어 있는가?			N/A		O
	3.2 정보 시스템 점검 관리	3.2.1 정보자산 목록을 식별하고 현행화 되어 있는가?			N/A		O
		3.2.2 정보보호시스템의 전산 설정이 잘 되어 있는가? (비인가 접근의 완전 차단 등)					O
		3.2.3 침입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네트워크 경로가 존재하는가?			N/A		O
		3.2.4 상용 메일, web hard 등 업무 외 서비스에 대한 접근 통제가 되고 있는가?			N/A		O
		3.2.5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제거하고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였는가?					O
		3.2.6 정보보호시스템의 로그가 6개월 이상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		N/A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주의	미흡	
3.3 PC 및 주요 데이터 관리	3.2.7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는가?			N/A		O
	3.2.8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원과 비조사원간에 네트워크를 분리구성 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N/A		O
	3.2.9	특허업무 관련 공간 및 시스템 대상 비인가 유·무선 인터넷(Wibro, HSDPA, 스마트폰 테더링, 와이파이 등)을 통한 우회 정보통신망 사용을 금지하는가?			N/A		O
	3.3.1	특허청 업무시스템 접속을 위한 단말 PC에 대한 접근통제는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			N/A		O
	3.3.2	인터넷 검색 PC내 자료 유출차단을 위한 보안통제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N/A		O
	3.3.3	인터넷PC내 특허업무 관련 중요 자료의 저장을 금지하고 있는가?					O
	3.3.4	PC별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력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이 기록·관리되고 있는가?			N/A		O
	3.3.5	PC 등 단말기 대상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한 백신 프로그램으로 월 1회 이상 검사를 수행하는가?					O
	3.3.6	업무망 및 인터넷망 PC 등 단말기 대상 운영체제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수행하는가?					O
4. 개인정보보호	4.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였는가?					
	4.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였는가?					
	4.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4.4	개인정보 취급자(조사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가?					
	4.5	PC 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를 실시하는가?					
5. 기타	5.1	(상기 항목 이외) 특허청에서 권고하는 보안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 비고란 “O” 표시는 최초 등록 시 필수 점검 항목이며, 이후 보안실태점검 시에는 모든 항목을 점검 함
- ※ 보안현황 점검표의 각 점검항목은 “양호”, “보통”, “주의”, “미흡” 중 하나로 평가 하며, 어느 하나의 항목에 대해 “미흡”을 받거나,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받은 경우는 등록요건인 보안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 관리적, 기술적 보안체계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특허정보조사 전문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해야 함
- ※ 물리적 보안체계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특허청 보안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을 준수해야 함

(별지1 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조사·분류 전문기관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기관	기관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자산평가액)			
설립목적			
설립년월일			
업무·기술분야	업무분야	[]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 국제특허 선행기술조사 [] 특허분류	
	기술분야		
변경등록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특허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사·분류 전문기관의 []등록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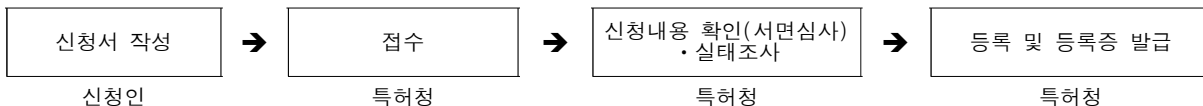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현황 2.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 현황 3.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겸직 여부 등을 포함한 임직원 현황 4.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5.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별지2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특허심사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허법」 제226조(비밀 누설죄등) 및 제226조의2(전문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에 의거, 특허심사지원 사업 수행 및 미공개 출원명세서의 취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유지 및 보안의무를 다할 것이며,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제3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패행위의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상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음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1】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기술분야

조사원 자격	기술분야(13개)
기계금속 건설	▪ 기계
	▪ 건설
	▪ 금속
	▪ 운송·원동장치
화학생명	▪ 농림수산
	▪ 의료생명
	▪ 화학공정·장치
	▪ 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 반도체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컴퓨터·전자상거래
	▪ 전력기술

【별첨 2】

기술분야별 특허분류코드(CPC)

구분	기술분야	특허 분류코드(CPC)
기계금속 건설	기계	A41G1/00, A44B, A44C, A45B, A45D, A45F(3/00, 3/15-5/), A47B, A47C, A47G, A47J, A47L, A61H(1/, 3/, 5/), A61J, A62B(1/-5/, 11/-99/), A62C, A63B, A63C, A63D, A63G, A63H, A63J, A63K, B01L, 제외코드 B01L(3/, 7/), B03C, B05B, B05C, B06B, B07C, B08B, B23B, B23C, B23D, B23F, B23G, B23P, B23Q, B24B, B24C, B24D, B25B, B25C, B25D, B25F, B25G, B25H, B25J, B26B, B26D, B26F, B27B, B27C, B27D, B27F, B27G, B27H, B28D, B29C(64/, 67/), B60L(50~58/제외), B60M, B31B, B31C, B31D, B31F, B41B, B41C, B41D, B41F, B41G, B41K, B41L, B41M, B41N, B42B, B42C, B42D, B42F, B44B, B44C, B44D, B44F, B61B, B61C, B61D, B61F, B61G, B61H, B61J, B61K, B63B(1/-8/, 35/44, 38/-45/), B63J(1/-4/), B65B, B65C, B65D, B65G(3/-19/, 21/-39, 40/00-47/58, 47/60-69, 49/00-08, 57/-69/), B66F, B67B, B67C, B67D, B68G, B81B, B81C, D06F, E02D(1/), E02D29/08, E02F(3/, 5/), E05B, E05G, E21C(25/-51/), F01B, F01C, F01D, F01K, F01L, F03B, F03C, F03D, F03G, F03H, F04B, F04C, F04D, F04F, F15B, F15C, F15D, F16B, F16C, F16D71/04, F16G, F16J, F16K, F16L, F16P, F16S, F16T, F17B, F17C, F17D, F21W, F21Y, F22B, F22D, F22G, F23B, F23C, F23D, F23G, F24B, F24C, F24D, F24F, F24H, F24S, F24T, F24V, F25B, F25C, F25D, F25J, F26B, F28B, F28C, F28D, F28F, F28G, F42D(1/-7/), G01B(1/-5/, 13/-21/), G01C, G01F, G01G, G01K, G01L, G01M(1/-10/, 13/-17/, 99/), G01N, 제외코드 G01N(3

구분	기술분야	특허 분류코드(CPC)
		0/-33/), G01P, G01T, G02B(1/, 3/, 7/-25/), G02C, G03B(15/0442-0457), G03G, G05B(G05B 19/제외), G05D, G05G, G07B, G07D, G07F, G07G, G09B(1/-7/, 11/-19/, 21/-29/), G09D, G10K(11/), G12B
	건설	A47D, A47F, A47H, A47K, A61G(17/-99/), B02B, B02C, E01B, E01C, E01D, E01F, E01H, E02B, E02C, E02D(3/-37/), 제외코드(E02D29/08) E03B, E03C, E03D, E03F, E04B, E04C, E04D, E04F, E04G, E04H, E05C, E05D, E05F, E06B, E06C, E21D, E21F, F23H, F23J, F23K, F23L, F23M, F23N, F23Q, F23R, F27B, F27D,
	금속	B21B, B21C, B21D, B21F, B21G, B21H, B21J, B21K, B21L, B22C, B22D, B22F, B23H, B23K, B30B, C11C, C12M, C21B, C21C, C21D, C22B, C22C, C22F, C23C, C23D, C23F, C23G, C25B, C25C, C25D, C25F
	운송·원동장치	B60B, B60C, B60D, B60F, B60G, B60H, B60J, B60K, B60N, B60P, B60Q, B60R, B60S, B60T, B60V, B60W, B61L, B62B, B62C, B62D, B62H, B62J, B62K, B62L, B62M, B63B(B63B 1/-9/, B63B 35/44, B63B 38/-45/ 제외), B63C, B63G, B63H, B63J(B63J 1/-4/ 제외), B64B, B64C, B64D, B64F, B64G, B65G(1/, 47/70-967, 51/-54/), B65H, B66B, B66C, B66D, E02F(E02F 3/, 5/ 제외), E21B, E21C(E21C 25/-51/ 제외), F01M, F01N, F01P, F02B, F02C, F02D, F02F, F02G, F02K, F02M, F02N, F02P, F16D(F16D71/04 제외), F16F, F16H, F16M, F16N, F41A, F41B, F41C, F41F, F41G, F41H, F41J, F42B, F42C, F42D(F42D 1/-7/ 제외), G09B(9/)
화학생명	농림수산	A01B, A01C, A01D, A01F, A01G, A01H, A01J, A01K, A01L, A01M, A01N(1/-3/), A21B, A21C, A21D, A22B, A22C, A23B, A23C, A23D, A23F, A23G, A23J, A23L, A23N, A23P, A24B, A24C, A24D, A24F(1/-

구분	기술분야	특허 분류코드(CPC)
		25/, 40/, 42/, 47/), B68B, B68C, B68F, C12C, C12F, C12G, C12H, C12J, C12L
	의료생명	A46B, A46D, A61B, A61C, A61D, A61F, A61G(1/-15/), A61H(7/-35/, 37/-99/), A61K(6/, 8/90-8/99, 9/, 31/, 33/-36/, 38/, 39/, 41/-51/, 2039/), A61L, A61M, A61N, A61Q, A62B(7/-9/), B01L(3/, 7/), C07G, C07H, C07J, C07K, C08B, C11B, C12N, C12P, C12Q, C13B, C13K, C40B, G01N(30/-33/), G16H(30/, 40/, 50/, 70/, 80/)
	화학공정 ·장치	A01N(25/-65/), A23K, A43D, A61K(8/00-8/70), B01B, B01D, B01F, B01J(2/-19/, 39/-49/), B03B, B03D, B04B, B04C, B07B, B09C, B09B, B27J, B27K, B27L, B27M, B27N, B29B, B29C, 제외코드 B29C(64/, 67/), B29D, B32B(7/9/11/15/21/23/37/(06~085, 18~187, 22~226,28)제외), B65F, C02F, C03B, C05B, C05C, C05D, C05F, C05G, C07B, C07C, C07F, C09B, C10L, C10M, C10N, C11D, D21B, D21C, D21D, D21F, D21G, D21H, D21J, F24J, G03D, G06F(19/00, 19/10-19/28), H01M(6/, 8/, 12/, 14/, 16/), G16B, G16C
	소재	A24F(27/-31/), A41B, A41C, A41D, A41F, A41G(3/-5/), A41H, A42B, A42C, A43B, A43C, A45C, A45F(3/02-14), A61H(36/), A62D, B01J(20/-38/), B05D, B28B, B28C, B82B, B82Y, C01B, C01C, C01D, C01F, C01G, C03C, C04B, C06B, C06C, C06D, C06F, C07D, C08C, C08F, C08G, C08H, C08J, C08K, C08L, C09C, C09D, C09F, C09G, C09H, C09J, C09K, C10B, C10C, C10F, C10G, C10H, C10J, C10K, C14B, C14C, C30B, D01B, D01C, D01D, D01F, D01G, D01H, D02G, D02H, D02J, D03C, D03D, D03J, D04B, D04C, D04D, D04G, D04H, D05B, D05C, D06B, D06C, D06G, D06H, D06J, D06L, D06M, D06N, D06P, D06Q, D07B, G03C, G03F(7/008-021), H01M(2/14-2/185, 4/, 10/)
전기전자정 보통신	반도체	G03F, 제외코드(G03F 7/008-021), H01L(21/027-18, 21/20-288, 21/30-318, 21/32-86, 22/, 23/, 27/14-27/32)

구분	기술분야	특허 분류코드(CPC)
	전기전자	B32B(7/,9/,11/,15/,21/,23/,37/(06~085, 18~187,22~226,28)), B41J, B43K, B43L, B43M, G01B(7/, 9/, 11 /), G01D, G01H, G01J, G01M(11/), G01Q, G01R, G01V, G01W, G02B(5/, 26/, 27/, 30/), G02F, G03 B, 제외코드(G03B15/0442-0457) G03H, G04B, G04 C, G04D, G04F, G04G, G04R, G05B 19/, G05F, G 06K(9/), G06M, G07C, G08B, G08G, G09G, G10B, G10C, G10D, G10F, G10G, G10H, G10K(1/-9/, 13 /-15/), G11B, G11C, F21H, F21K, F21L, F21S, F21 V, G09F, H01C, H01F, H01G, H01K, H01L(21/00, 21/02, 25/, 27/00-27/13, 28/, 29/, 33/, 35/-49/, 51/), H01P, H01S, H02M, H02P, H04B(1/38-1/388 8), H04Q, H04R, H04S, H05B, H05C, H05F, H05G, H05H, H05K
	정보통신	G06F(3/00-3/027, 3/03-3/039, 3/048-3/16, 11/, 12 /), G06K(1/-7/, 11/-21/), G06Q50/10, G06T, G08 C, G10L, H01Q, H03B, H03C, H03D, H03F, H03G, H03H, H03J, H03K, H03L, H03M, H04B(1/00-1/3 0, 1/40-1/76, 3/, 5/, 7/, 10/-17/), H04H, H04J, H04K, H04L, H04M, H04N, H04W
	컴퓨터·전자 상거래	A63F, G06C, G06D, G06E, G06F(1/, 3/041-3/047, 5/, 7/-9/, 13/, 15/, 16/, 17/, 19/00, 21/, 30/, 40 /), G06G, G06J, G06N, G06Q(10/, 20/, 22/, 24/, 30/, 40/, 50/00, 50/02, 50/04, 50/06, 50/08, 50/1 2-20, 50/26, 50/28, 50/30, 50/32, 50/34, 90/, 99 /), G09C, G16H(10/, 15/, 20/), G16Z
	전력기술	B60L(50~58/), G01S, G02B(6/00-6/54), G21B, G21 C, G21D, G21F, G21G, G21H, G21J, G21K, H01B, H01H, H01J, H01L(31/), H01M(2/), 제외코드 H01 M(2/14-2/185), H01R, H01T, H02B, H02G, H02H, H02J, H02K, H02N, H02S

【별첨 3】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전산검색용 장비

-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 검색 시스템(특허넷)』을 이용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다음의 전산검색용 장비 구축 필요
 - 개인 전산장비(PC/프린터/클라우드 접속 지문입력장치 등)
 - 특허넷 시스템 접속, “IP스캔, L2스위치”(전문기관 위치)
 - 특허넷 시스템 연결을 위한 전용회선(회선속도 10Mbps이상)
 - 특허넷 시스템 접속, 보안시스템 장비*(방화벽, SSL VPN, L3스위치 등)
 - * 보안시스템 장비는 특허청 내에 설치되며, 특허청이 지정한 보안장비 설치·운영 위탁 업체(부가통신사업자)와 장비 사용에 대한 운영 위탁 계약 필요

